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

◇ 제·개정 이유

-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출원인 가이드 마련
- 빠르게 변화하는 디자인 출원 및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강한 디자인권 창출 환경 조성
- 분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물품목록을 정비함으로써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

◇ 주요내용

- 가.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라 물품류 구분의 원칙, 물품명칭 등에 화상 디자인 관련 내용 신설
- 나.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물품명칭을 추가, 변경, 삭제하고 물품 용도에 따라 분류기호를 이동 및 변경
- 다. 출원동향 및 심사관 의견을 반영하여 분류표시를 개편하는 등 「물품류별 물품목록」 운영을 위하여 기존 분류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